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7월 21일, 조지연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
론 · 소위원회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6.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지연의원)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의적·차별적인 범죄를 막기엔 역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대하여만 별도로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반의사불벌 조항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개정안은 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위반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의 상황은 법 제36조(금품 청산)·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등 다양한 양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